강릉 주문진 풍림아이원 하버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

-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.10.21.입니다. (청약자격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)
-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(www.apt2you.com) 및 국민은행(www.kbstar.com)에서 운영하는 "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"을 통한 사전체험을 권함)
- 본 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을 위해 "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"을 점수로 개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"청약가점제"가 적용됩니다.
- 본 주택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, 전매제한은 없습니다.
-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. (단,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,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)
- 본 아파트는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(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)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. ■ 본 아파트는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(2016.08.12.)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10.21.) 현재 주택의 공급자격을 강릉시 및 강원도 거주자까지 확대해야 공급합니다. 단, 동일순위 신청자조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(강릉시)의 거주자가 우선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2016.08.12.) 적용되오니,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  - 청약 순위제개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: 기존 '1. 2. 3순위' 방식으로 → '1. 2순위' 방식으로 간소화
  -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: 기존 '무주택세대주'인 경우만 신청 가능 → 세대주가 아닌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(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) 단,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
  -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: 예치금액 이외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/ 주택규모변경기간(2년)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(3개월) 폐지
  -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: 기존 '60㎡ 이하 +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' → '60㎡ 이하 + 공시가격비 바수도권 6천만원 이하,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'로 변경
  ※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.08.12. 개정된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시 적용되던 일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 개정안이 (2016.08.12.) 적용되오니,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  -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등 청약시 선납(先納)인정: 기존 "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등에 청약시 청약예금과 달리 선납(先納)이 인정되지 않고 약정일이 되어야 납입 인정" → "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
  ※ 청약예금의 경우 해당 면적 금액만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 가능
-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(제1조 주공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일)(2016.10.21.)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"장애인복지법",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주택공급신청일(특별 및 일반공급)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단,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,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(최하층을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)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(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각 동별 최저층을 말함)]
- 만 65세 이상인 자, "장애인복지법",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,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중에 경쟁이 있으면 만 65세 이상인 자와 "장애인복지법",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 중에 경쟁이 있으면 만 65세 이상인 자와 "장애인복지법",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 중에 경쟁이 있으면